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-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-

긴급자동차 양보 위반 단속 메뉴얼



강 북 소 방 서

I | 관련 근거

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추진하고자 함.

〈 2015. 1. 3(토) [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](#) “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 시 지시” 〉

- **[단속 및 과태료 부과]** 소방서장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, 그 단속된 차량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(자치구)에 통보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절차로 이뤄 짐

◇소방기본법 제21조(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)

제21조(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)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(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·구급차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「도로교통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.

□ 단속법령근거

○ 정 의 (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)

22 “긴급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

- 가. 소방차
- 나. 구급차
- 다. 혈액 공급차량
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
○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29조(긴급자동차 우선통행)

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.

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.

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6.8] [[시행일 2011.12.9]]

○ **부과기준 : 도로교통법 제160조 (과태료)**

③ 차가 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7조제3항, 제23조, 제25조제5항, **제29조제4항·제5항**,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**과태료를 부과한다.** [개정 2013.5.22] [[시행일 2013.11.23]]

1.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(제15조제3항, **제29조제4항·제5항**, 제32조,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○ **항목별 과태료 세부사항 :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6]**

▶ **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88조제4항관련) <개정2016.2.11.>**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5.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	제160조 제3항	1) 승합자동차등 : 8만원 2) 승용자동차등 : 7만원 3) 이륜자동차등 : 5만원

○ **부과권자 : 도로교통법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**

제161조 3. 제160조제3항(제15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과태료: 시장등 [[시행일 2011.12.9.]]

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

② **특별시장**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**구청장**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법령근거>

【도로교통법 제29조, 제160조】

- 긴급자동차 운선통행
- 위반시 과태료

<과태료 부과 징수권자>

【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】

- 특별시장 / 광역시장
- 제주특별자치도지사
- 시장 / 군수

<부과 징수권 위임 '12.5.>

【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】

- 대통령령(제86조 제2항)
- 시장 → 구청장

II 판 단 기 준

○ 판단기준 : 국민안전처 판단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(영상자료 촬영)

□ **위반차량 판단기준** (국민안전처-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1. 제3자가 보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
2. 좌우측으로 양보(피양)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
 - ◆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
 - ◆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(20초 이상)
3.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
4.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
 **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*

-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(교통체증 등)
-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
- 교통사고, 도로공사, 집회·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

● **교차로나 그 부근에서**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

● **일반통행로에서**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

● **편도 1차선 도로에서** 긴급자동차 접근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 하지 않는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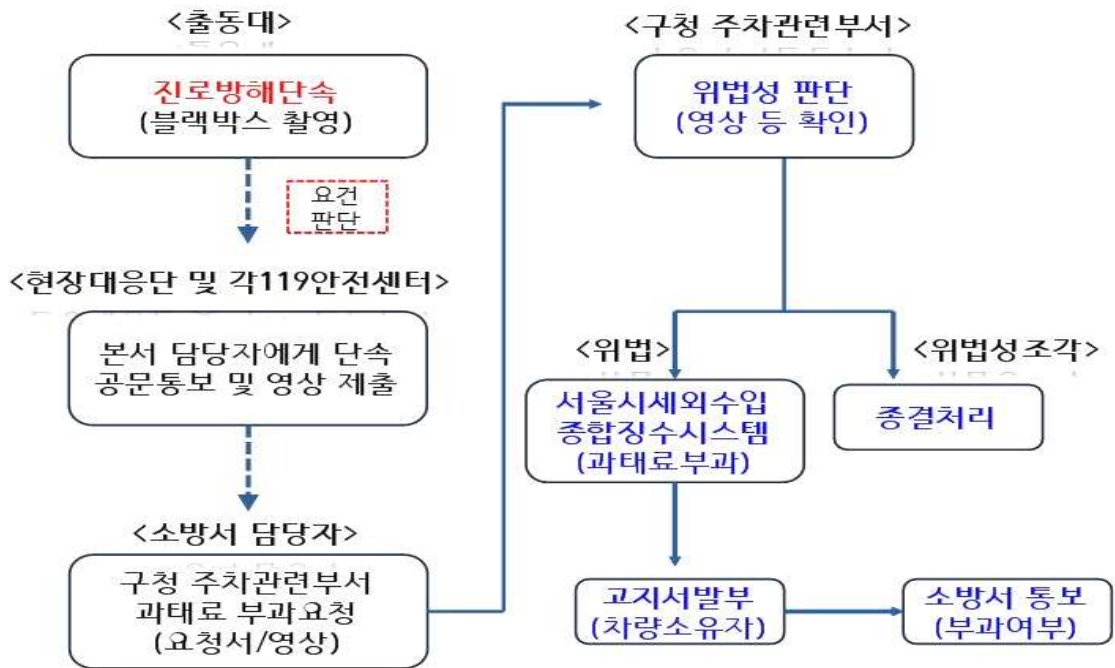
● **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** 일반차량이 2차선으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

● **편도3차선 이상 도로에서** 일반차량이 1,3차선으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



III 처리 절차

□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개요



위반차량 단속
(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)

구분	내용
종료번호	계단관리과
위반차량번호	차종 : 스타렉스 70세5637
위반일시	2015. 8. 15.(토) 23:29 분경
위반장소	우유동 사거리 → 화계사 사거리 방향
위반내용	주중 가장자리로 피할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출동 중 소방차 전방을 계속 방해하여 처벌함
적용법령	도로교통법 제28조(근로자동차의 우선통행) 위반
단속공무원	소속:현장대응단 계급:소방장 정명:최창호

과태료 부과 요청
(소방서 담당자)



고지서 발부
(구청 주차관리과)

과태료 부과여부
통보

※ 본서 공문으로 관련 사항 보고

1) 단속 통보서 공문보고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

-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절차(붙임참조)

2) 블랙박스 영상 제출

(서울시입하드 - 재난관리과 - 대응총괄팀 - 소방용수 - 진로양보영상제출)